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등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바, 사회적 통념과 주민 여론에 비추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조항 분리 신설(안 제3조)
- 나.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제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및 한글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로 월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461,360원의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할때”를 “할 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u></p> <p>① 강서구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 2,461,36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 개시 월, 퇴직 월 등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신 설></p> <p><u>제3조 (생 략)</u></p> <p><u>제4조(여비의 종류)</u>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p>	<p><u>제2조(의정활동비)</u> ① 강서구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u>제3조(월정수당)</u>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461,360원의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p> <p><u>제5조(여비의 종류)</u> ① ----- ----- ----- <u>할 때</u> ----- ----- ----- -----.</p>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구 분								
시·도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